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목 차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I.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3
III. 세부 전형별 안내	
○ 재외국민 특별전형	7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15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20
IV. 유의사항	
○ 등록 및 환불	23
○ 서류제출 유의사항	23
○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26
○ 이중등록 금지	26
○ 전형 관련 사항	26
○ 기타사항	27
V. 문의처	28
VI.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례 안내	29
VII. 제출서류 양식	31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자유전공학부			17			
인문 사회 계열	국어국문학과 ◆	27	27	제한없음	제한없음	
	철학과					
	국사학과 ◆					
	영어영문학부 ◆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본문화학과					
	프랑스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					
	사회학과 ◆					
	국제학부					
	법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아동학과 ◆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자연 공학 계열	화학과	27	27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학과					
	물리학과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AI전자정보 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인공지능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바이오헬스 융합대학					생명공학과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의생명과학과 ◆
바이오메디컬소프트웨어학과						
바이로직스공학부						
	의의공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3	3			
간호대학	간호학과 ◆	3	3			
계		33				

※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이수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단, 영어영문학부는 영어영문학트랙만 가능함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모집
-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
- 원서접수 및 면접고사 등 모든 전형은 지원한 모집단위(학부·학과)가 있는 교정에서 실시
- 자유전공학부 입학 시, 모든 학과(부) 선택 가능(2학년 진급 전까지 선택). 단, 신학과, 보건계열(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사범계열(특수교육과), 예체능계열(음악과), 글로벌경영대학은 제외
- 아래 전공은 복수의 하위 트랙(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어영문학부 : 영어영문학, 영어영미문화 2개 트랙
 - 국제학부 : 미국학, 중국학, 국제관계학, 국제통상 4개 트랙
 -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 문화콘텐츠, 미디어공학, 테크니컬아티스트 3개 트랙
 -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 소비자전문가, 공간디자인·주거학 2개 트랙
- 의예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을 획득함
-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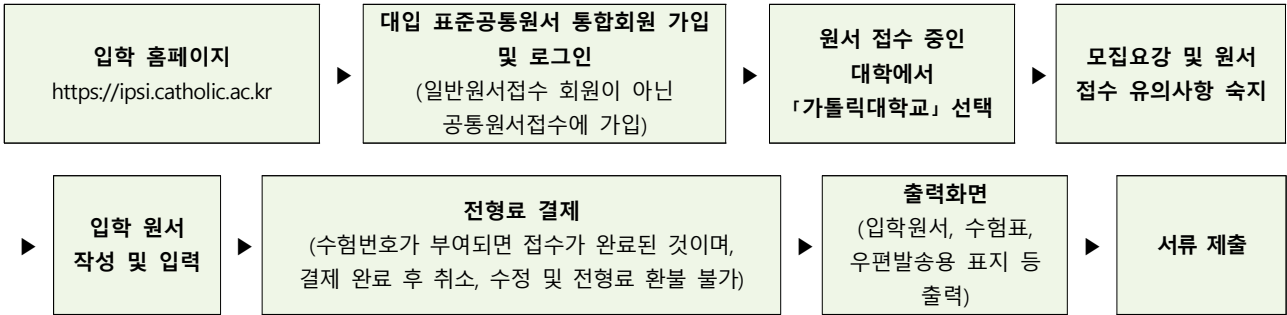
Ⅱ.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6. 7. 7.(화) 10:00 ~ 7. 10.(금) 18:00까지	• 인터넷 접수(https://ipsi.catholic.ac.kr)
서류제출	국내 등기우편	2026. 7. 14.(화)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지원 모집단위(학부·학과)가 있는 교정으로 제출(모집요강 4쪽 주소 참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스캔본 온라인 업로드 없음
	국제 특급우편	2026. 7. 10.(금) 우편 소인까지 유효	
종합기록표 작성 및 수정	전 모집단위	2026. 7. 7.(화) 10:00 ~ 7. 14.(화) 17:00까지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수정 - 2026. 7. 14.(화) 17:00까지 수정 가능 - 마감시한에 접속 차단되며 해당 기간 내 최종 저장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면접고사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2026. 7. 31.(금) 09:00 ~	• 고사장소 및 고사장 입실시간 - 2026. 7. 29.(수) 14:00 공지 예정 - 본교 입학 홈페이지 참조 (https://ipsi.catholic.ac.kr)
1단계 합격자 발표	의예과, 간호학과	2026. 8. 14.(금) 14:00(예정)	•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s://ipsi.catholic.ac.kr)
면접고사	의예과, 간호학과	2026. 8. 22.(토) 09:00 ~	• 고사장소 및 고사장 입실시간 - 2026. 8. 14.(금) 14:00 공지 예정 - 본교 입학 홈페이지 참조 (https://ipsi.catholic.ac.kr)
합격자 발표 및 문서등록	최초 합격자 발표	2026. 8. 28.(금) 14:00(예정)	• 합격자 확인 :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s://ipsi.catholic.ac.kr)
	최초 합격자 등록	2026. 12. 21.(월) ~ 12. 23.(수) 16:00까지	• 문서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록 안내문」 참조
	충원 합격자 발표	2026. 12. 24.(목) ~ 12. 29.(화) 18:00까지	• 등록 기간 내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	2026. 12. 30.(수) 16:00까지	• 2차 이후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은 추후 입학 홈페이지 안내 참조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 2. 12.(금) 16:00까지	• 기간 내 미납 시 미등록 처리함

2. 원서접수 안내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파일형식)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 뒤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한 2026. 7. 10.(금) 18:00에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오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한까지 원서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종합기록표 작성/수정은 2026. 7. 14.(화) 17:00까지 가능**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서류제출 안내

- 제출서류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등기우편(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우편발송용 표지 부착)**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집단위	교정구분	등기우편 발송 주소	비고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성심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김수환관 1층 입학처 원서접수 담당자 앞	모든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지원 모집단위, 수험번호 및 성명 반드시 기재
		Office of Admissions Songsim Global Campu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4662)	
의예과, 간호학과	성의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서울성모병원 별관 1층 교무팀 원서접수 담당자 앞	
		Academic Affairs Team Songeui Medical Campu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 st floor of Annex, Seoul St.Mary's Hospital,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06591)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예) 원본은 1부이면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는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합격자는 2026. 12. 30.(수)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최종 제출한 원본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23쪽 서류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전형은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여러 모집단위에 대한 복수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동일 모집시기의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 대한 복수지원(2회 이상 전형료 결제 및 수험번호 부여) 확인 시 결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 오류 등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접수 시 전형 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연락처 오기, 타인 연락처 기재,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 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는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 성심교정(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 02-2164-4587, 4045
 - ◆ 성의교정(의예과, 간호학과) : 02-3147-8126~8129

5. 전형료

가. 전형료

모집단위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130,000	70,000
의예과, 간호학과	200,000	100,000

나. 전형료 환불

(1) 전형료 전액 환불(접수 수수료 제외)

- 지원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등)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지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2) 전형료 일부 환불

- 의예과, 간호학과의 경우 1단계 전형 불합격자에게 2단계 전형료(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50,000원/북한이탈주민: 25,000원)를 환불함. 단, 1단계 전형 합격자로서 2단계 전형에 결시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전형료 환불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전형료 반환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 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7.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Ⅲ. 세부 전형별 안내

재외국민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쪽 참조

2. 지원자격 : 아래 <<공통 지원자격>>과 <<요소별 자격기준>> 동시 충족자

<<공통 지원자격>>

- (1)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3) 해외 근무자^①의 자녀^②

* 용어 해설

- ①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② 해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요소별 자격기준>>

요소	자격기준	인정기준
해외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재학기간 인정 기준 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case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근무/사업/영업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 해외 근무/사업/영업기간 인정 기준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해외 체류하며 근무/사업/영업한 기간

해외 체류기간	학생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p>◎ 체류기간 인정 기준</p> <p>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까지 방학을 포함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p> <p>case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방학을 포함하여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p> <p>◎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은 273일, 부모는 243일</p>
--------------------	--	--

<<보호자의 해외 근무/사업/영업기간에 따른 지원자격 유형>>

구분	세부 설명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해외 근무 공무원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 근무 상사직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③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 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④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⑤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범위 ①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②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 현지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현지 자영업자 자격으로 지원해야 함
현지 자영업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현지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현지 자영업자 자격으로 지원해야 함
기타 재외국민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 선교는 불가)의 자녀 • 외국유학연수자(재직증명서 등 제출)의 자녀

※ 해외 근무/사업/영업 중에 부, 모가 해당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전 지원자격 요건과 변경된 지원자격 요건을 합산하여 부모와 학생 모두가 근무/재학/체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외 근무자 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시) 현지법인 근무자(2023.8.1.~2025.7.31.) + 현지 자영업자(2025.8.1.~2026.7.31.)

☞ 현지법인 근무자(2023.8.1.~2025.7.31.) + 현지 자영업자(2025.8.1.~2026.7.31.) 서류를 모두 제출

3.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한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사회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단, 부모가 근무(거주)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되, 인정여부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함. 제3국 수학사유서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제출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2)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 13학년제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12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산하여 지원자격을 심사함

구분	국내 교육과정	13학년제	비고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Year 2 ~ Year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Year 13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완료하여야 고교 졸업으로 인정함 • 13학년제 교육과정의 Year 2~13을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국내 교육과정의 1~12학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중학교	7학년 ~ 9학년	Year 8 ~ Year 10	
고등학교	10학년 ~ 12학년	Year 11 ~ Year 13	

(3) 재학기간 인정기준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약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중복학기»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학기 판단 예»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 각 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재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재학기간 산정 시, 1년 2학기제인 국가의 경우 6개 학기, 1년 3학기제인 경우 9개 학기, 1년 4학기제인 경우 12개 학기를 의미함

(4) 자격인정 기준시점 및 입학 허용기간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지원자격 유형 분류기준

-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 변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기간 동안의 모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코로나-19’ 등 관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 기간 인정

가. 대상 :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휴교, 해외 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 휴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간 : 학교(학생)의 휴교 기간 및 직장(해외 근무자)의 휴업 기간 등

다. 적용가능 범위

- 휴교 등 기간 : 학생 재학 기간 및 체류 기간, 해외 근무자와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 기간
- 휴업 등 기간 :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
- ※ 소명자료[공적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공문 등)] 제출 필요
- ※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선발방법	서류평가	면접고사	비고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100%	-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3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함. 반영 방법은 27쪽 참조.

나. 전형방법

(1) 서류평가

모집단위	평가내용
의예과, 간호학과	고교 성적, 학업능력 및 어학능력 입증서류, 수상실적, 해외체류국가의 대입시험성적 및 관련성적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2) 면접고사

모집단위	일시	장소	평가내용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2026. 7. 31.(금) 09:00 ~	성심교정 지정장소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함
의예과, 간호학과	2026. 8. 22.(토) 09:00 ~	성의교정 지정장소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성장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고사장소 및 고사장 입실시간

- 전 모집단위(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 2026. 7. 29.(수) 14:00 공지 예정(본교 입학 홈페이지)
- 의예과, 간호학과 : 2026. 8. 14.(금) 14:00 공지 예정(본교 입학 홈페이지)

5.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1) 전형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2)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부여한 예비합격자 순으로 선발함
- (3)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원자는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4) 동점자는 아래의 기준대로 처리함.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모집단위	구분	동점자 처리 순서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① 면접고사 전공수학능력 항목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인성 및 가치관 항목 성적 우수자 ③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선발
	2단계	①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③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6. 전형일정 : 3쪽 참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안내(전 모집단위 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2026. 6. 1.(월)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반드시 서류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함(스캔본 온라인 업로드 없음)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목록표는 전형료 결제 후 접수완료확인(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
2	입학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3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1부 (학생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이혼/재혼 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모 사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입양 사실 있을 시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조회기간(학생, 부모 모두 해당) : 학생 중학교(7학년) 입학 일자부터 발급일 하루 전까지
5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위임장 (부, 모, 학생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 2 서식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제출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6	여권 사본(부, 모, 학생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 모, 학생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365민원포털(https://g4k.go.kr)에서 온라인 발급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8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부서, 직위, 파견국가명, 파견기간 명시 필수 본사 발급분만 인정 현지 자영업자의 경우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서류>		
9	○ 해외 근무 상사직원 자녀 :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 또는 해외 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함

연번	제출서류	비고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보호자의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사실 증빙서류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①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②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법인세 납부 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예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 :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보호자의 세금납부증명서 제출
	○ 현지 자영업자 자녀 : ①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②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세금납부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예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 :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 기타 재외국민 자녀 : ① 해당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등록증 사본 ② 해당 종교단체장이 발급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록증 : 해당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확인 • 파견사실 확인서 : 선교국 및 파견기간 명시 필수
10	학력조회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및 서명
11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초·중·고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당시 기간 동안의 학사일정표 제출해야 함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 • 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필수 • 매학기별 시작일 및 종료일 표시 필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12	초·중·고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기간(전입(입학)일, 전출(졸업)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3	초·중·고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재학증명서에 학년·학기별 재학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학년/학기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고,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학기를 기재(예: G1-1 성적, Y2-1 성적)하여 제출
1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시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해야 함 •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15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증빙서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제출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코로나19 또는 전쟁으로 인한 경우 포함)
16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서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제출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코로나19 또는 전쟁으로 인한 경우 포함)

나. 의예과, 간호학과 추가 제출서류 안내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기타서류 목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목록표 순서대로 서류 정리하여 함께 제출
2	공인영어성적 • 의예과 [TOEFL(iBT), TEPS, IELTS] • 간호학과 [TOEFL(iBT), TEPS, IELTS, TOE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제출 서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한 성적만 인정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4	영어 이외의 어학능력 입증서류 (HSK, JLPT, DELF, DELE, TestDaF, TORF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자료만 인정
5	각국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高考, 센터시험, ACT, A-Level, AP, ATAR, NCEA, IB, SAT 등)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자료만 인정
6	교내·외 관련 기타서류 (자격증, 수상경력·봉사활동 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자료만 인정 추천서 제출 불가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4쪽, 23쪽 참조

8. 원서접수 안내 : 4쪽 참조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쪽 참조

2. 지원자격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력기준	외국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어학기준 (영어 또는 한국어)	아래 어학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영어> 1. TOEFL(iBT) : 점수 개편 이전 응시(120점 만점) 80 이상, 점수 개편 이후 응시(6점 만점) 4.0 이상 2. IELTS 5.5 이상 3. TEPS 298 이상 <한국어> 1. TOPIK 3급 이상 2. 상기에 상응하는 어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교 면접고사에서 한국어구사능력을 인정받은 자) ※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 가능함 ※ 의예과 및 간호학과는 지원자격 충족 여부와 별개로 영어능력시험 성적 제출 필수

3.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신입학하여 1학기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이수한 경우만 인정함
※ 1학년 1학기 중간편입, 국내 미취학 후 1학년 2학기 신입학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12학년제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각 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함

<<중복학기>>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한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사회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격인정 기준시점 및 입학 허용기간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4) 기타사항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선발방법	서류평가	면접고사	비고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100%	-	일정 인원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3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함. 반영 방법은 27쪽 참조.

나. 전형방법

(1) 서류평가

모집단위	평가내용
의예과, 간호학과	고교 성적, 학업능력 및 어학능력 입증서류, 수상실적, 해외체류국가의 대입시험성적 및 관련성적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2) 면접고사

모집단위	일시	장소	평가내용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2026. 7. 31.(금) 09:00 ~	성심교정 지정장소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함
의예과, 간호학과	2026. 8. 22.(토) 09:00 ~	성의교정 지정장소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성장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고사장소 및 고사장 입실시간

- 전 모집단위(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 **2026. 7. 29.(수) 14:00** 공지 예정(본교 입학 홈페이지)
- 의예과, 간호학과 : **2026. 8. 14.(금) 14:00** 공지 예정(본교 입학 홈페이지)

5.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1) 전형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2)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원자는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동점자는 아래의 기준대로 처리함.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모집단위	구분	동점자 처리 순서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① 면접고사 전공수학능력 항목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인성 및 가치관 항목 성적 우수자 ③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선발
의예과, 간호학과	2단계	①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③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6. 전형일정 : 3쪽 참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안내(전 모집단위 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2026. 6. 1.(월)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반드시 서류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함(스캔본 온라인 업로드 없음)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목록표는 전형료 결제 후 접수완료확인(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
2	입학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3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조회 기간 : 출생일부터 발급일 하루 전까지
4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위임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 2 서식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제출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5	외국인 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제출 앞면, 뒷면 복사하여 제출
6	학생 본국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에 한하여 제출 별도 공증 필요 없음(해당국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복사하여 제출)
7	여권 사본(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복수국적, 외국 국적 취득 또는 여권 교체 등의 경우 해당 여권의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8	학력조회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및 서명
9	외국학교 학사일정표(초·중·고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 당시 기간 동안의 학사일정표 제출해야 함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 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필수 매학기별 시작일 및 종료일 표시 필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10	초·중·고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기간[전입(입학)일, 전출(졸업)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1	초·중·고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로 같음할 수 있음. 단, 재학증명서에 학년·학기별 재학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학년/학기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고,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학기를 기재(예: G1-1 성적, Y2-1 성적)하여 제출
1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시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해야함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13	어학(영어 또는 한국어) 성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예과, 간호학과 : 공인영어성적 필수 제출 (단, 의예과, 간호학과 추가 제출서류로 분류하여 제출) 의예과, 간호학과 외의 학과 : 보유자에 한하여 제출
14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증빙서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제출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코로나19 또는 전쟁으로 인한 경우 포함)

나. 의예과, 간호학과 추가 제출서류 안내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기타서류 목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목록표 순서대로 서류 정리하여 함께 제출
2	공인영어성적 • 의예과 [TOEFL(iBT), TEPS, IELTS] • 간호학과 [TOEFL(iBT), TEPS, IELTS, TOE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제출 서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한 성적만 인정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4	영어 이외의 어학능력 입증서류 (HSK, JLPT, DELF, DELE, TestDaF, TORF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자료만 인정
5	각국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高考, 센터시험, ACT, A-Level, AP, ATAR, NCEA, IB, SAT 등)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자료만 인정
6	교내·외 관련 기타서류 (자격증, 수상경력·봉사활동 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자료만 인정 추천서 제출 불가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4쪽, 23쪽 참조

8. 원서접수 안내 : 4쪽 참조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쪽 참조

2.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선발방법	서류평가	면접고사	비고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100%	-	일정 인원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3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함. 반영 방법은 27쪽 참조.

나. 전형방법

(1) 서류평가

모집단위	평가내용
의예과, 간호학과	고교 성적, 학업능력 및 어학능력 입증서류, 수상실적, 해외체류국가의 대입시험성적 및 관련성적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2) 면접고사

모집단위	일시	장소	평가내용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2026. 7. 31.(금) 09:00 ~	성심교정 지정장소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함
의예과, 간호학과	2026. 8. 22.(토) 09:00 ~	성의교정 지정장소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성장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고사장소 및 고사장 입실시간

- 전 모집단위(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 2026. 7. 29.(수) 14:00 공지 예정(본교 입학 홈페이지)
- 의예과, 간호학과 : 2026. 8. 14.(금) 14:00 공지 예정(본교 입학 홈페이지)

4.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1) 전형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2)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원자는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동점자는 아래의 기준대로 처리함.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모집단위	구분	동점자 처리 순서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① 면접고사 전공수학능력 항목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인성 및 가치관 항목 성적 우수자
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선발
	2단계	①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5. 전형일정 : 3쪽 참조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안내(전 모집단위 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2026. 6. 1.(월)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반드시 서류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함(스캔본 온라인 업로드 없음)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목록표는 전형료 결제 후 접수완료 확인(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 									
2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발급)										
4	학력관련서류	<table border="1"> <tr> <td>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td> <td>북한고교 출신자</td> </tr> <tr> <td>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td> <td>국내고교 출신자</td> </tr> <tr> <td>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td> <td>해외고교 출신자</td> </tr> <tr> <td>검정고시 합격증명서</td> <td>검정고시 출신자</td> </tr> </table>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북한고교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국내고교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외고교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자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북한고교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국내고교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외고교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자										
5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시군구청 발급)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나. 의예과, 간호학과 추가 제출서류 안내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기타서류 목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목록표 순서대로 서류 정리하여 함께 제출
2	공인영어성적 • 의예과 [TOEFL(iBT), TEPS, IELTS] • 간호학과 [TOEFL(iBT), TEPS, IELTS, TOE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한 성적만 인정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해당자에 한함
4	영어 이외의 어학능력 입증서류 (HSK, JLPT, DELF, DELE, TestDaF, TORF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자료만 인정
5	각국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高考, 센터시험, ACT, A-Level, AP, ATAR, NCEA, IB, SAT 등)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자료만 인정

연번	제출서류	비고
6	교내·외 관련 기타서류 (자격증, 수상경력·봉사활동 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자료만 인정 • 추천서 제출 불가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4쪽, 23쪽 참조

7. 원서접수 안내 : 4쪽 참조

IV. 유의사항

등록 및 환불

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구분	최초 합격자	총원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26. 8. 28.(금) 14:00 예정	2026. 12. 24.(목) ~ 12. 29.(화) 18:00까지
발표 방법	입학 홈페이지 공지 (https://ipsi.catholic.ac.kr)	입학 홈페이지(https://ipsi.catholic.ac.kr) 공지 또는 전화개별 통보
등록 기간	2026. 12. 21.(월) ~ 12. 23.(수) 16:00까지	~ 2026. 12. 30.(수) 16:00까지
합격자 등록	입학 홈페이지(https://ipsi.catholic.ac.kr)에서 합격 확인 후 문서등록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임	
등록금 납부	등록금 확정 후 신입생 등록기간[2027. 2. 10.(수) ~ 2. 12.(금) 16:00까지]에 완납함	
유의사항	반드시 지원자가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학 홈페이지(<https://ipsi.catholic.ac.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하여야 입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등록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등록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등록 후 등록금 납부기간[2027. 2. 10.(수) ~ 2. 12.(금) 16:00까지]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처리합니다.

라.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는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다수의 대학에 문서등록 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불 신청기간 내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한하여 미등록 총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예) 원본이 1부이면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는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합격자는 2026. 12. 30.(수)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최종 제출한 원본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2026. 6. 1.(월)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다. 재학/근무/거주 관련 서류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내학교 및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드시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라.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외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있는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마. 제출 서류 상의 성명이 서로 다르거나, 제출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실제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판장이 발행하는 동일한 증명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바.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서류(번역 공증본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전형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사.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 **제출된 서류는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따라 본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시점에 상관없이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합니다.
- 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이 미달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차. <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만 해당>어학성적 및 대학입학학력자료(SAT, AP, IB 등) 제출 방법
- **공인성적(TOEFL, SAT, AP, IB 등)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ID/PW/URL 등)을 제출서류 상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가톨릭대학교로 직접 스코어 리포팅(Score Reporting)을 신청한 경우, 2026. 7. 14.(화)까지 스코어 리포팅 한 성적증명이 도착해야 합니다. 진위여부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스코어 리포팅이 미도착한 경우 해당 성적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성적표 사본 제출자는 2026. 12. 30.(수)까지 반드시 원본 또는 스코어 리포팅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함. (성적 유효기간 사전 확인 권장)
 - IB 성적은 "Final Score"만 인정. Predicted Score 인정 안 함. Personal Code/PIN 기재하여 제출.
 - TOEFL(iBT) 성적은 Test Date Scores만 인정. My Best Scores 인정 안 함.
- ◆ **가톨릭대학교 기관번호 ETS : 2433, College Board : 7415, IB : 036609**
- 카. 자격인정 기준시점을 2027년 2월 28일로 하는 합격자(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원본과 보호자의 근무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연수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졸업 직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7. 2. 19.(금)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2025.03.30.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기스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 :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6.03.기준)

국가명	학교 수	학교명
일본	4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	13	웨이하이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대만	2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	2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2	리야드한국학교, 젯다한국학교
인도네시아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1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1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1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1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
이란	1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1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1	프놈펜한국국제학교
합계		16개국 34개교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 가.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합니다.
- 나.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입학정원의 2% 이내)이 포함되며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라.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 제외)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대학은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 처리하며, 이를 위반하면 입학은 무효가 됩니다.

이중등록 금지

- 가.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그 중 하나의 대학만을 선택하여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이중등록 시에는 등록된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 나.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라. 본교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1개 전형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전형 관련 사항

- 가.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제출한 지원서류의 조회(출입국사실조회, 학력조회 등)를 거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불응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다. 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자국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태블릿PC, 녹음기 등 전자·통신장비 일체의 소지를 불허합니다. 또한 고사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퇴실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 라. 전형 기간 중의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곳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주소나 전화번호 기재로 인한 연락 두절 등에 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위조,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를 합니다.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바.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모든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릅니다.

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방법

전형	조치사항	반영방법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제1호	전형 만점기준 5% 감점
	제2호	
	제3호	
	제4호	전형 만점기준 20% 감점
	제5호	
	제6호	전형 만점기준 30% 감점
	제7호	
	제8호	부적격
	제9호	

기타사항

가. 지원자는 가톨릭대학교 입학 홈페이지(<https://ipsi.catholic.ac.kr>)를 통해 안내되는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발표 관련 안내사항(일정, 고지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 후 지원자가 서류제출 시기에 제출한 「학력조회동의서」를 바탕으로 학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력 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라.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개별 연락합니다.

V. 문의처

○ 입학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모집단위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모집단위	교정구분	담당부서	전화	E-mail	홈페이지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성심	입학처	02-2164-4587, 4045	admiss@catholic.ac.kr	https://ipsi.catholic.ac.kr
의예과, 간호학과	성의	교무팀	02-3147-8126~9	ipsi@catholic.ac.kr	의예과: https://medicine.catholic.ac.kr 간호학과: https://nursing.catholic.ac.kr

VI.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례 안내

case 1. 온전한 학기 이수

- 해외 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우측에 기재한 기간 외에는 해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 학사일정

G8 (2021. 8. 1. ~ 2022. 6. 23.)
G9 (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재학기간

G8 (2021. 8. 1. ~ 2022. 6. 23.)
G9 (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1. 8. 1. ~ 2024. 7. 31.

<질문 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1) 원칙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

☞ G8(2021. 8. 1. ~ 2022. 7.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2) 예외 : 상기 사안처럼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재학 기간으로 인정

☞ G8(2021. 8.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질문 2>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2021. 8. 1. ~ 2024. 7. 31.

<질문 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이 시작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365일) G8(2021. 8. 1. ~ 2022. 7.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273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243일 이상) 체류

※ 학생이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이수했더라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질문 4> 학생이 G10 학기 수료 후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 체류일수 3/4를 충족한 경우 충족

<질문 5>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 체류일수 2/3를 충족한 경우 충족

<질문 6> 해외 근무자가 2024. 6. 26.(발령 종료일 :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미충족

☞ 해외 재직 기간 3년(1,095일)을 충족하지 않음. 해외 근무자는 2024. 7. 31.까지 재직해야 함.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체류일수 2/3를 충족하더라도 지원 자격 미충족

case 2. G8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해외 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우측에 기재한 기간 외에는 해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 학사일정

G8 (2021. 8. 1. ~ 2022. 6. 23.)
G9 (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재학기간

G8 (2021. 9. 1. ~ 2022. 6. 23.)
G9 (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1. 9. 1. ~ 2024. 8. 31.

<질문 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G8을 한 달 늦게 편입하였으므로, G11 한 달을 추가 재학해야 함**

☞ **G8(2021. 9.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4. 8. 31.)**

<질문 2>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2021. 9. 1. ~ 2024. 8. 31.

<질문 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기준일 1] (2021. 9. 1. ~ 2022. 8. 31.), (2022. 9. 1. ~ 2023. 8. 31.), (2023. 9. 1. ~ 2024. 8. 31.)

[기준일 2] **G8(2021. 9. 1. ~ 2022. 7. 31.) + G11(2024. 8. 1. ~ 2024. 8.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 [기준일 1] 또는 [기준일 2] 중 학생, 해외 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체류일수 산정

case 3. G10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G10(2023. 8.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 재학기간

G10(2023. 9.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3. 9. 1. ~ 2026. 8. 31.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지원불가. 2026. 6. 23. 졸업이므로 부족한 한 달을 채울 수 없으므로 재학기간 미충족

G10(2023. 9.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Ⅶ. 제출서류 양식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 Global Campu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Office of Admissions, 43 Jibong-ro, Bucheon-si,
Gyeonggi-do (14662), Republic of Korea
Tel : +82-2-2164-4045 / Email : admiss@catholic.ac.kr

해당 전형	해당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특별전형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전 모집단위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Subject : Attendance Record Verific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Admissions Office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 kindly request your assistance with our admission process. The person below has applied to our Undergraduate Program and as we would like to give all applicants our full consideration for admission, we take an extra step of verifying the information which each applicant has provided us as accurate.

It will help our selection process greatly if you can take a moment to check if the information below reflects the applicant's accurate dates of attendance in your school. We have enclosed a sheet so that the appropriate boxes can be checked and sent back to us via e-mail.

Your help is greatly appreciated.

Sincerely yours,
Dean of Admissions Offic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etter of Reques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admission in the 2027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give my full consent so th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an request my attendance records.

I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fill out the right hand side of the following table and e-mail the completed form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udent Records Provided by Applicant [지원자 작성란]	Verification Report [해외학교 학력조회 담당자 작성란]
Name (해당학교에 등록된 이름)	Accuracy of enrollment record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Additional Comments : _____ _____ _____
Date of Birth (mm/dd/yyyy)	
School Name	
Date of Admission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mm/dd/yyyy)	
Date of Graduation (or transfer to another school) (mm/dd/yyyy)	
Date (mm/dd/yyyy) : ____ / ____ / ____	Title : _____
Applicant's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SAMPLE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 지원서 제출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재학한 외국학교의 수 만큼 출력한 뒤
Applicant's Signature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십시오.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jeui Medical Campu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cademic Affairs Team, 1st floor of Annex, Seoul St. Mary's Hospital,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91), Republic of Korea
Tel : +82-2-3147-8128 / Fax : +82-2-3147-8289
Email : ipsi@catholic.ac.kr

해당 전형	해당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특별전형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의예과, 간호학과

Subject : Attendance Record Verific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Admissions Office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 kindly request your assistance with our admission process. The person below has applied to our Undergraduate Program and as we would like to give all applicants our full consideration for admission, we take an extra step of verifying the information which each applicant has provided us as accurate.

It will help our selection process greatly if you can take a moment to check if the information below reflects the applicant's accurate dates of attendance in your school. We have enclosed a sheet so that the appropriate boxes can be checked and sent back to us via e-mail.

Your help is greatly appreciated.

Sincerely yours,
Dean of Admissions Offic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MPLE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 지원서 제출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재학한 외국학교의 수 만큼 출력한 뒤
Applicant's Signature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십시오.

Letter of Reques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admission in the 2027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give my full consent so th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an request my attendance records.

I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fill out the right hand side of the following table and e-mail the completed form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udent Records Provided by Applicant [지원자 작성란]	Verification Report [해외학교 학력조회 담당자 작성란]
Name (해당학교에 등록된 이름)	Accuracy of enrollment record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Additional Comments : _____ _____ _____
Date of Birth (mm/dd/yyyy)	
School Name	
Date of Admission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mm/dd/yyyy)	
Date of Graduation (or transfer to another school) (mm/dd/yyyy)	
Date (mm/dd/yyyy) : ____ / ____ / ____	Title : _____
Applicant's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Name : _____ Signature : _____



제3국 수학사유서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전형구분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제3국 수학에 대한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제3국 수학기간	~
학교명	
학교 소재지 (국가 및 도시)	
보호자 직장명	
보호자 직장 소재지 (국가 및 도시)	
제3국 수학사유	

<안내>
해당자에 한해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입력 아님)

상기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 _____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전형구분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재학기간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대상 (해당 사항에 체크하세요)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기결손/중복	<input type="checkbox"/> 조기졸업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기록
	<input type="checkbox"/> 휴학	<input type="checkbox"/> 성적기록누락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등록부등본
	<input type="checkbox"/> 월반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전쟁(ex. 휴교, 체류기간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안내>

해당자에 한해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입력 아님)

상기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 _____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항방불령,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